

서울특별시 조례 문화재 등의 용어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747
------	------

2024. 04. 29.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04월 03일, 김원중 의원(찬성자 23명)

나. 회부일자 : 2024년 04월 08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2024.04.2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김원중 의원)

가. 제안이유

- 문화재보호법상의 ‘문화재’는 재화의 의미로 인식되어왔고,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다는 한계가 있어, ‘문화재’를 ‘국가유산’ 체제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유산기본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개정되어 ‘24년 5월 17일’ 시행 예정입니다.

- 이에 서울특별시 조례 중 ‘문화재’ 등의 용어를 상위법 제·개정에 맞추어 ‘국가유산’ 등의 용어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어 일괄하여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조례 중 ‘문화재’ 등의 용어를 ‘국가유산’ 등의 용어로 변경함.

Ⅲ. 검토의견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준석)

가. 개정안의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현재 문화재 분류체계를 규정하고 있는 「문화재 보호법」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고, 새로운 국가유산 체계를 반영한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시 각종 조례의 조문 중 ‘문화재’ 등의 용어를 ‘국가유산’ 등으로 변경하고자 발의된 것임.

나. 문화재 용어 및 분류체계 변경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財)’는 유물에 ‘자산’의 개념을 강조한 측면이 있어 자연물(천연기념물 등)과 사람(무형문화재)을 지칭하기에 부적합하고, 특히 현행 문화재의 명칭과 분류체계는 제정 당시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을 원용한 것으로 국제기준¹⁾에 부합하도록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²⁾
- 이에 따라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유산’의 개념을 적용하여 「국가유산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제정

1) 유네스코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에서는 세계유산을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별도의 협약으로 무형유산을 정의하고 있음

2)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보호와 가치 증진을 위한 문화재위원회 및 무형문화재위원회 결의문

2023.5.16., 시행 2024.5.17.), 국가유산 체제를 도입하여 문화재 분류 체계를 재정립하였음.

<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문화재 분류체계 변화 >

문화재(문화재보호법)	국가유산(국가유산기본법)	비고
유형문화재	문화유산 ◦ 유형문화유산, ◦ 기념물(사적지류) ◦ 민속문화유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개정)
기념물(사적지류)		
민속문화재		
기념물(명승류, 천연기념물류)	자연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정)
무형문화재	무형유산	무형유산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

- 이와 함께 정부는 새로운 국가유산체계에 맞추어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³⁾하였으며, 「문화재보호법」과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 「무형유산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각각 개정⁴⁾하였음.

다. 조례안 일괄개정 사항

- 동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문화재’ 등의 용어를 ‘국가유산’ 등으로 변경하기 위해 총 23개의 조례를 대상으로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참고자료 1].

3) 제정 2023.3.21. / 시행 2024.5.17.

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개정 2023.3.21., 시행 2024.5.17.
「무형유산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개정 2023.8.8., 시행 2024.5.17.

- 이는 법령 상호 간 용어를 통일시킴으로써 용어 불일치로 인한 시민의 혼동을 방지하고 조례 내용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쉽게 하며,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적시에 반영함으로써 표현이 모순되지 않도록 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 조치라 하겠음.
- 참고로 동 개정조례안의 경우 서울시의 문화재 기본 조례라 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의 개정사항이 누락되어 있는바, 이는 동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024년 4월 3일 발의되어 동 조례안과 별도의 심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임.

[참고자료1]

< 정비대상 조례와 조문 >

조문	정비대상 조례	정비조문	정비내용
제2조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제36조제3항제2 호가목	유형 문화재관련 → 유형문화유산 관련
제3조	서울특별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제10조제2항	문화재 → 국가유산
제4조	서울특별시 결선택견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제5조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제7조제8호	문화재보호구역 → 국가유산보호구역
제6조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별표 1의 제2호	문화재 → 국가유산
제7조	서울특별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제명	서울특별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 서울특별시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제2조	국외소재문화재 → 국외소재문화유산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8항에 따른 문화재를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항에 따른 문화유산을
			문화재 → 문화유산
		제3조	국외소재문화재 → 국외소재문화유산
		제4조제1항과 제2항	국외소재문화재 → 국외소재문화유산
		제5조	국외소재문화재 → 국외소재문화유산
		제6조	국외소재문화재 → 국외소재문화유산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 「서울특별시 국가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지정문화재로 → 지정문화유산으로
		제7조제1항, 제7조제 2항과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국외소재문화재 → 국외소재문화유산
		제8조	국외소재문화재 → 국외소재문화유산 문화재청 → 국가유산청
			국외소재문화재재단 →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조문	정비대상 조례	정비조문	정비내용
제8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8조제2항제5호	문화재 → 국가유산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문화재 → 국가유산
		제14조제3항제3호	문화재 보호구역 → 국가유산보호구역
		제52조제1항제2 호다목	문화유산 → 국가유산 문화재 → 국가유산
		별표 2의 제2호가목2)	문화재보호구역 → 국가유산보호구역
		별표 2의 제2호가목6)	문화재 → 문화유산
		별표 2의 제3호가목2) 와 5)	문화재 → 문화유산
		별표 2의 제3호나목	문화재 → 문화유산
제9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8조의2제1호	문화재 → 문화유산
		제47조제1항	「문화재보호법」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를 → 문화유산을
			문화재의 → 국가유산의
			문화재청장 → 국가유산청장
		제54조제11항제2호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지정자연유산
제10조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별표 4의 제4호러목	문화재 → 국가유산
		제명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형문화재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형유산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무형문화재”란 → “무형유산”이란
		제2조제2호부터 4호	무형문화재를 지역적 → 무형유산을 지역적
			무형문화재를 실현·향유함 → 무형유산을 실현·향유함
제10조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 호	무형문화재 → 무형유산

조문	정비대상 조례	정비조문	정비내용
제10조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	무형문화재 → 무형유산
		제5조	무형문화재 → 무형유산
		제2장의 제목	무형문화재 정책의 수립 및 추진 → 무형유산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제6조제1항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문화재청장 →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제6조제2항제4호	무형문화재 → 무형유산
		제6조제4항	무형문화재 → 무형유산
		제7조의 제목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위원회의 설치) → (서울특별시무형유산위원회의 설치)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무형문화재의 → 무형유산의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위원회 → 서울특별시무형유산위원회
		제7조제1항제1호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이하 “시무형문화 재”라 한다) → 서울특별시무형유산(이하 “시무형유산”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서울특별시긴급보호무형문화재(이하 “시긴급보호무형문화재”라 한다) → 서울특별시긴급보호무형유산(이하 “시긴급보호무형유산”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4호	무형문화재 → 무형유산
		제7조제5항제1호	고등교육법」 따른 → 「고등교육법」 에 따른
			무형문화재와 → 무형유산과
		제7조제5항제2호	무형문화재 → 무형유산
		제7조제5항제3호	무형문화재 관련 → 무형문화재 관련
			무형문화재에 → 무형유산에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	무형문화재 → 무형유산
		제13조제3항제1호	「고등교육법」 제2조 → 「고등교육법」 제2조
			무형문화재와 → 무형유산과
		제13조제3항제2호	무형문화재와 → 무형유산과
		제3장의 제목	시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보유자의 인정 등 → 시무형유산의 지정 및 보유자의 인정 등

조문	정비대상 조례	정비조문	정비내용
제10조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제목	(시무형문화재의 지정) → (시무형유산의 지정)
		제17조제1항	무형문화재로서 국가무형문화재 → 무형유산으로서 국가무형유산
			무형문화재 중 → 무형유산 중
			시무형문화재 → 시무형유산
		제17조제2항	시무형문화재의 지정 대상 → 시무형유산의 지정 대상
			시무형문화재의 지정 기준 → 시무형유산의 지정 기준
			시무형문화재를 → 시무형유산을
		제17조제3항	무형문화재에 → 무형유산에
		제17조제4항	무형문화재가 시무형문화재 → 무형유산이 시무형유산
		제18조의 제목	(시간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 → (시간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시무형문화재를 시간급보호무형문화재 → 시무형유산을 시간급보호무형유산
		제18조제1항제1호	시무형문화재가 → 시무형유산이
		제18조제1항제2호	시무형문화재 → 시무형유산
		제18조제1항제3호	시무형문화재로서의 → 시무형유산으로서의
			어려워진 시무형문화재 → 어려워진 시무형유산
		제18조제2항	시간급보호무형문화재 → 시간급보호무형유산
			시무형문화재 → 시무형유산
		제18조제3항	무형문화재의 보전 → 무형유산의 보전
			시무형문화재 → 시무형유산
		제18조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시간급보호무형문화재 → 시간급보호무형유산
		제18조제3항제4호	무형문화재 → 무형유산
		제19조제1항 본문	시무형문화재를 → 시무형유산을
			시무형문화재의 → 시무형유산의
		제19조제1항 단서	시무형문화재 → 시무형유산
		제19조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나목	무형문화재 → 무형유산
		제19조제2항제1호다목	무형문화재가 → 무형유산이
		제19조제4항	시무형문화재 → 시무형유산
		제20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	무형문화재 → 무형유산

조문	정비대상 조례	정비조문	정비내용
제10조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	시무형문화재 → 시무형유산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무형문화재 → 무형유산
		제22조의 제목	(시무형문화재 등의 지정 고시 및 효력 발생 시기) → (시무형유산 등의 지정 고시 및 효력 발생 시기)
		제22조제1항	시무형문화재 또는 시간급보호무형문화재를 → 시무형유산 또는 시간급보호무형유산을
		제22조제2항	시무형문화재 또는 시간급보호무형문화재 → 시무형유산 또는 시간급보호무형유산
		제25조의 제목	(시무형문화재 등의 지정 해제) → (시무형유산 등의 지정 해제)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시무형문화재 또는 시간급보호무형문화재가 → 시무형유산 또는 시간급보호무형유산이
		제2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시무형문화재 → 시무형유산
		제26조제1항제6호	시무형문화재를 → 시무형유산을
		제26조제1항제10호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 국가무형유산 전승교육사
		제27조의 제목	(무형문화재 대장) → (무형유산 대장)
		제27조제1항 전단	시무형문화재 → 시무형유산
			시간급보호무형문화재 대장(이하 “무형문화재대장” → 시간급보호무형유산 대장(이하 “무형유산대장”
		제27조제1항 후단	시무형문화재 및 시간급무형문화재 → 시무형유산 및 시간급무형유산
		제27조제2항	무형문화재대장 → 무형유산대장
		제4장의 제목	시무형문화재의 보전 → 시무형유산의 보전
		제28조제1항	시무형문화재의 보전 → 시무형유산의 보전
			시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 시무형유산의 전수교육
		제28조제3항	시무형문화재 → 시무형유산
		제28조제4항 전단	무형문화재 → 무형유산
		제28조제5항 본문	시무형문화재 → 시무형유산
		제28조제8항제1호 및 제3호	시무형문화재 및 시간급보호무형문화재 → 시무형유산 및 시간급보호무형유산
		제29조제1항 및 제2 항	시무형문화재 → 시무형유산
			무형문화재에 → 무형유산에
			무형문화재의 조사 → 무형유산의 조사

조문	정비대상 조례	정비조문	정비내용
제10조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30조	무형문화재 → 무형유산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시무형문화재 → 시무형유산
		제32조제1호 및 제2 호	무형문화재 → 무형유산
		제32조제3호	시무형문화재 → 시무형유산
			무형문화재 보존 → 무형유산 보존
		제33조제2호	시무형문화재 → 시무형유산
		제34조의 제목	(시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 (시무형유산의 보호·육성)
		제34조제1항	시무형문화재를 → 시무형유산을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시무형문화재의 보전 → 시무형유산의 보전
			시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 시무형유산의 전수교육
		제35조제1항	시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 시무형유산의 전수교육
			시무형문화재의 분야별 → 시무형유산의 분야별
		제35조제2항	무형문화재 → 무형유산
		제36조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 호	시무형문화재 → 시무형유산
		제37조의 제목	(시무형문화재의 공개의무 등) → (시무형유산의 공개의무 등)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시무형문화재를 → 시무형유산을
		제37조제2항 및 제3 항	시무형문화재를 → 시무형유산을
		제37조제6항	시무형문화재 → 시무형유산
		제38조제2항	시무형문화재 → 시무형유산
		제6장의 제목	무형문화재의 진흥 → 무형유산의 진흥
		제39조제1항 및 제3 항	무형문화재 → 무형유산
		제40조의 제목	(무형문화재의 교육지원 등) → (무형유산의 교육지원 등)
		제40조제1항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5조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5조
			무형문화재 → 무형유산
		제41조제2항	시무형문화재가 → 시무형유산이
		제42조	시무형문화재 → 시무형유산
		별표 1의 제목	시무형문화재 지정 대상 및 기준(제17조제 2항 관련) → 시무형유산 지정 대상 및 기준(제17조제2항 관련)
		별표 1의 제1호	시무형문화재는 → 시무형유산은

조문	정비대상 조례	정비조문	정비내용
제10조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별표 1의 제2호	시무형문화재는 무형문화재 → 시무형유산은 무형유산
		별표 2의 제목	시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선발 연령(제36조 관련) → 시무형유산 전수장학생 선발 연령(제36조 관련)
제11조	서울특별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	제2조제1호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를 →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을
제12조	서울특별시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	제명	서울특별시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
		제1조	문화재지킴이 → 국가유산지킴이
			문화재 → 국가유산
		제2조	“문화재지킴이” → “국가유산지킴이”
			문화재를 → 국가유산을
		제3조	문화재 → 국가유산
			문화재지킴이 → 국가유산지킴이
		제4조	문화재지킴이 → 국가유산지킴이
		제5조제1항과 제2항	문화재지킴이 → 국가유산지킴이
		제5조제3항	문화재 → 국가유산
		제6조	문화재지킴이 → 국가유산지킴이
		제7조	문화재지킴이 → 국가유산지킴이
		제8조	문화재지킴이 → 국가유산지킴이
		제9조	문화재 → 국가유산
			문화재지킴이 → 국가유산지킴이
제13조	서울특별시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호	문화재 → 국가유산
제14조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조	문화유산 → 국가유산
		제2조제1호 단서	「문화재보호법」 → 「국가유산기본법」
			문화재는 → 국가유산은
제15조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2호	「문화재보호법」 →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3항	문화재로 → 국가유산으로
			지정문화재 → 지정유산
		제3조의2제3호	문화재 → 국가유산
		제4조의2제2호	문화재 또는 문화재적 → 국가유산 또는 국가유산적
제16조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	문화재분야 → 국가유산분야
		제7조제3항	서울시문화재위원 및 문화재분야 → 서울시국가유산위원 및 국가유산분야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1항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제16조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제49조제1항제2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조문	정비대상 조례	정비조문	정비내용
제17조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제3호	「문화재보호법」 제35조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다만,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	서울특별시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호	문화재보호구역 → 국가유산보호구역
제19조	서울특별시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호	문화재청장 → 국가유산청장
		제5조 단서	「문화재보호법」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문화재보호법」 제62조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1조제2항제3호	건축·도시계획·관광·환경·문화재 → 건축·도시계획·관광·환경·국가유산
제20조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문화재보호법」에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가 →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이
			「문화재보호법」이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21조	서울특별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역사·전통문화·전통사찰·문화재 → 역사·전통문화·전통사찰·국가유산
			불교문화재 → 불교국가유산

조문	정비대상 조례	정비조문	정비내용
제22조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문화재청·서울특별시교육청·수도방위사령부 → 국가유산청·서울특별시교육청·수도방위사령부
		제4조제3항제4호	문화재 → 국가유산
		제7조제2항	② 유산구역은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른 문화재구역과 제27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으로 한다. → ② 유산구역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으로 한다.
		제7조제3항	③ 완충구역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한다. → ③ 완충구역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한다.
제23조	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제2항	문화재위원 → 국가유산위원
제24조	서울특별시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문화재 → 국가유산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토론요지 : 「없음」

Ⅵ.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조례 문화재 등의 용어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김원중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747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04월 03일

발 의 자: 김원중 의원(1명)

찬 성 자: 김영철, 김용일, 김지향,
김춘곤, 김혜영, 남창진,
민병주, 박상혁, 박 석,
박영한, 신동원, 유정인,
윤기섭, 이민석, 이병윤,
이봉준, 이숙자, 이종태,
이종환, 임춘대, 최민규,
홍국표, 황유정 의원(23
명)

1. 제안이유

- 문화재보호법상의 ‘문화재’는 재화의 의미로 인식되어왔고,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다는 한계가 있어, ‘문화재’를 ‘국가유산’ 체제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유산기본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개정되어 24년 5월 17일 시행 예정임.
- 이에 서울특별시 조례 중 ‘문화재’ 등의 용어를 상위법 제·개정에 맞추어 ‘국가유산’ 등의 용어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어 일괄하여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조례 중 ‘문화재’ 등의 용어를 ‘국가유산’ 등의 용어로 변경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가유산기본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 신 구조문대비표(첨부)

서울특별시 조례 문화재 등의 용어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산체제 전환으로 문화재 등의 용어가 국가유산 등의 용어로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조례 중 이에 관한 규정을 일괄하여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제2호가목 중 “유형 문화재관련”을 “유형문화유산 관련”으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결선택전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결선택전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로,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를 “서울특별시무형유산”으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경관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8호 중 “문화재보호구역”을 “국가유산보호구역”으로 한다.

제6조(「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2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를 “서울특별시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국외소재문화재”를 “국외소재문화유산”으로 한다.

제2조 중 ““국외소재문화재””를 ““국외소재문화유산””으로,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8항에 따른 문화재를”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항에 따른 문화유산을”로 한다.

제3조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국외소재문화재”를 “국외소재문화유산”으로 한다.

제4조제1항과 제2항 중 “국외소재문화재”를 각각 “국외소재문화유산”으로 한다.

제5조 중 “국외소재문화재”를 “국외소재문화유산”으로 한다.

제6조 중 “국외소재문화재”를 “국외소재문화유산”으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를 “「서울특별시 국가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지정 문화재로”를 “지정문화유산으로”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제7조제2항과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국외소재문화재”를 각각 “국외소재문화유산”으로 한다.

제8조 중 “국외소재문화재”를 “국외소재문화유산”으로,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을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으로 한다.

제8조(「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14조제3항제3호 중 “문화재 보호구역”을 “국가유산보호구역”으로 한다.

제52조제1항제2호다목 중 “문화유산”을 “국가유산”으로,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별표 2의 제2호가목2) 중 “문화재보호구역”을 “국가유산보호구역”으로 하고, 같은 목 6)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

별표 2의 제3호가목2) 와 5)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9조(「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본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를”
을 “국가유산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문화재의”를 “국가유산의”로, “문
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54조제1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
유산,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
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지정자연유산
별표 4의 제4호러목 중 “문화재”는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10조(「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
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명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무형
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무형문화재“란”을 ““무형유산”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무형문화재”를 각각 “무형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무형문화재를 지역적”을 “무형유산을 지역적”으로, “무형문화재를 실현·향유함”을 “무형유산을 실현·향유함”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 중 “무형문화재”를 각각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무형문화재”를 각각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5조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무형문화재 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무형유산 정책의 수립 및 추진”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문화재청장”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무형문화재”를 각각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위원회의 설치)”를 “(서울특별시무형유산위원회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무형문화재의”를 “무형유산의”로,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위원회”를 “서울특별시무형유산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이하 “시무형문화재”라 한다)”를 “서울특별시무형유산(이하 “시무형유산”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서울특별시긴급보호무형문화재(이하 “시긴급보호무

형문화재”라 한다)”를 “서울특별시긴급보호무형유산(이하 “시긴급보호무형유산”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고등교육법」 따른”을 “「고등교육법」에 따른”으로, “무형문화재와”를 “무형유산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무형문화재 관련”을 “무형유산 관련”으로, “무형문화재에”를 “무형유산에”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무형문화재”를 각각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13조제3항제1호 중 “「고등교육법」 제2조”를 “「고등교육법」 제2조”로 하고, 같은 호 및 제2호 중 “무형문화재와”를 각각 “무형유산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시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보유자의 인정 등”을 “시무형유산의 지정 및 보유자의 인정 등”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시무형문화재의 지정)”을 “(시무형유산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무형문화재로서 국가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서 국가무형유산으”로, “무형문화재 중”을 “무형유산 중”으로, “시무형문화재”를 “시무형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무형문화재의 지정 대상”을 “시무형유산의 지정 대상”으로, “시무형문화재의 지정 기준”을 “시무형유산의 지정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무형문화재를”을 “시무형유산을”로, “무형문화재에”를 “무형유산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무형문화재가 시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이 시무형유산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시간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을 “(시간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무형문화재를 시간급 보호무형문화재”를 “시무형유산을 시간급보호무형유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시무형문화재가”를 “시무형유산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무형문화재”를 “시무형유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시무형문화재로서의”를 “시무형유산으로서의”로, “어려워진 시무형문화재”를 “어려워진 시무형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시간급보호무형문화재”를 “시간급 보호무형유산”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시무형문화재”를 “시무형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무형문화재의 보전”을 “무형유산의 보전”으로, “시무형문화재”를 “시무형유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간급보호무형문화재”를 각각 “시간급보호무형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중 “시무형문화재를”을 “시무형유산을”로, “시무형문화재의”를 “시무형유산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시무형문화재”를 “시무형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나목 중 “무형문화재”를 각각 “무형유산”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무형문화재가”를 “무형유산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시무형문화재”를 “시무형유산”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무형문화재”를 각각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시무형문화재”를 각각 “시무형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무형문화재”를 각각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시무형문화재 등의 지정 고시 및 효력 발생 시기)”를 “(시무형유산 등의 지정 고시 및 효력 발생 시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무형문화재 또는 시긴급보호무형문화재를”을 “시무형유산 또는 시긴급보호무형유산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무형문화재 또는 시긴급보호무형문화재”를 “시무형유산 또는 시긴급보호무형유산”으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시무형문화재 등의 지정 해제)”를 “(시무형유산 등의 지정 해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무형문화재 또는 시긴급보호무형문화재가”를 “시무형유산 또는 시긴급보호무형유산이”로 한다.

제2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중 “시무형문화재”를 각각 “시무형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시무형문화재를”을 “시무형유산을”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를 “국가무형유산 보유자”로,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를 “국가무형유산 전승교육사”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무형문화재 대장)”을 “(무형유산 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시무형문화재”를 “시무형유산”으로, “시긴급보호무형문화재 대장(이하 “무형문화재대장”)”을 “시긴급보호무형유산 대장(이하 “무형유산대장”)”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시무형문화재 및 시긴급무형문화재”를 “시무형유산 및 시긴급무형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무형문화재대장”을 “무형유산대장”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시무형문화재의 보전”을 “시무형유산의 보전”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시무형문화재의 보전”을 “시무형유산의 보전”으로, “시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시무형유산의 전수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무형문화재”를 “시무형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시무형문화재”를 “시무형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제1호 및 제3호 중 “시무형문화재 및 시긴급보호무형문화재”를 각각 “시무형유산 및 시긴급보호무형유산”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중 “시무형문화재”를 각각 “시무형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중 “무형문화재에”를 “무형유산에”로, “무형문화재의 조사”를 “무형유산의 조사”로 한다.

제30조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무형문화재”를 “시무형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무형문화재”를 각각 “무형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시무형문화재”를 “시무형유산”으로, “무형문화재 보존”을 “무형유산 보존”으로 한다.

제33조제2호 중 “시무형문화재”를 “시무형유산”으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시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을 “(시무형유산의 보호·육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무형문화재를”을 “시무형유산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무형문화재의 보전”을 “시무형유산의 보전”으로, “시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시무형유산의 전수교육”

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시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시무형유산의 전수교육”으로, “시무형문화재의 분야별”을 “시무형유산의 분야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시무형문화재”를 각각 “시무형유산”으로 한다.

제37조의 제목 “(시무형문화재의 공개의무 등)”을 “(시무형유산의 공개의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시무형문화재를”를 각각 “시무형유산을”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시무형문화재”를 “시무형유산”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시무형문화재”를 “시무형유산”으로 한다.

제6장의 제목 “무형문화재의 진흥”을 “무형유산의 진흥”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및 제3항 중 “무형문화재”를 각각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무형문화재의 교육지원 등)”을 “(무형유산의 교육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5조”를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5조”로,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41조제2항 중 “시무형문화재가”를 “시무형유산이”로 한다.

제42조 중 “시무형문화재”를 “시무형유산”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시무형문화재 지정 대상 및 기준(제17조제2항 관련)”을 “시무형유산 지정 대상 및 기준(제17조제2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1의 제1호 중 “시무형문화재는”을 “시무형유산은”으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시무형문화재는 무형문화재”를 “시무형유산은 무형유산”으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시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선발 연령(제36조 관련)”을 “시무형유산 전수장학생 선발 연령(제36조 관련)”으로 한다.

제11조(「서울특별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를”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을”로 한다.

제12조(「서울특별시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문화재지킴이”를 각각 “국가유산지킴이”로,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2조 중 ““문화재지킴이””를 ““국가유산지킴이””로, “문화재를”를 각각 “국가유산을”로 한다.

제3조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문화재지킴이”를 “국가유산지킴이”로 한다.

제4조 중 “문화재지킴이”를 “국가유산지킴이”로 한다.

제5조제1항과 제2항 중 “문화재지킴이”를 각각 “국가유산지킴이”로 하고, 같

은 조 제3항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6조 중 “문화재지킴이”를 “국가유산지킴이”로 한다.

제7조 중 “문화재지킴이”를 “국가유산지킴이”로 한다.

제8조 중 “문화재지킴이”를 “국가유산지킴이”로 한다.

제9조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문화재지킴이”를 “국가유산지킴이”로 한다.

제13조(「서울특별시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14조(「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문화유산”을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2조제1호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을 “「국가유산기본법」”으로, “문화재는”을 “국가유산은”으로 한다.

제16조제2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국가유산기본법」”으로, “문화재로”를 “국가유산으로”로 한다.

제15조(「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지정문화재”를 “지정유산”으로 한다.

제3조의2제3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4조의2제2호 중 “문화재 또는 문화재적”을 “국가유산 또는 국가유산적”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문화재분야”를 “국가유산분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서울시문화재위원 및 문화재분야”를 “서울시국가유산위원 및 국가유산분야”로 한다.

제16조(「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1항”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제49조제1항제2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1항”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제17조(「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35조”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보

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서울특별시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문화재보호구역”을 “국가유산보호구역”으로 한다.

제19조(「서울특별시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5조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문화재보호법」 제62조”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2조”로 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건축·도시계획·관광·환경·문화재”를 “건축·도시계획·관광·환경·국가유산”으로 한다.

제20조(「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에”를 “「자연유산

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로,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가”를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이”로, “「문화재보호법」이”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로 한다.

제21조(「서울특별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

특별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역사·전통문화·전통사찰·문화재”를 “역사·전통문화·전통사찰·국가유산”으로, “불교문화재”를 “불교국가유산”으로 한다.

제22조(「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서울특별시교육청·수도방위사령부”를 “국가유산청·서울특별시교육청·수도방위사령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유산구역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으로 한다.

③ 완충구역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한다.

제23조(「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 중 “문화재위원”을 “국가유산위원”으로 한다.

제24조(「서울특별시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6조(서울총괄건축가 운영 등) ① · ② (생략) ③ 서울총괄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시장 등이 발주하는 총사업비 1 00억원 이상 또는 설계비 2억원 이상의 건축물 및 공간환경사업 의 기획 및 기본설계에 관한 자 문. 다만, 총사업비 100억원 미 만 또는 설계비 2억원 미만이다 라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u>유형 문화재관련</u> 시설건립 사업 및 문화시설(박물관, 미 술관, 전시관, 공연장) 건립 사업 나. 다. (생략) 3. ~ 7. (생략) ④ ~ ⑦ (생략)	제36조(서울총괄건축가 운영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현행과 같음) 2. ----- ----- ----- ----- -- 가. <u>유형문화유산</u> 관련 ----- ----- ----- ----- 나. 다. (현행과 같음) 3. ~ 7. (현행과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공공건축 사업 건축기획의 내용) ① (생략) ② 시장등이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도시, 공원녹지, <u>문화재</u> , 재생, 지속가능성 등 관련분야 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10조(공공건축 사업 건축기획의 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 ----- <u>국</u> <u>가유산</u> ----- ----- -----.

「서울특별시 결련택견 진흥에 관한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무예 진흥법」,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의 목적에 따라 결련택견이 지닌 민간 무예 문화로서의 무형문화유산적 가치를 선양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및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결련택견“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 무예로서의 특수성을 내포하여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제56호로 지정·고시된 공동체 종목으로서 겨루기 택견 및 관련 경기 문화를 말한다.	1. ----- ----- -----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무형유산 -----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 -----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8. 도시재생활성화지역, <u>문화재보호구역</u> , 서울 한양도성축·수변축·자연녹지축 경관관리구역 등 특정 경관관리구역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8. ----- <u>국가유산보호구역</u> ----- ----- ----- -----
9. (생략)	9.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서울특별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재보호법」 제6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서 반출된 <u>국외소재문화재</u> 보호 및 환수를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u>국외소재 문화재</u>”란 서울특별시에서 국외로 반출된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8 항에 따른 문화재를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 장”라 한다)은 2천년 고도의 역사 를 고려한 <u>문화재</u>의 효율적 보존 ·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u>국외소 재문화재</u> 보호 및 환수활동을 적 극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u>서울특별시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u> 제1조(목적) -- 조례는 「문화유산 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9조----- <u>국외소재문화유산</u>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u>국외소재 문화유산</u>”이란 서울특별시에서 국 외로 반출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 항에 따른 문화유산을 말한다. 제3조(책무) ----- ----- ----- <u>문화유산</u>의 ----- ----- <u>국외소재 문화유산</u> -----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국외소재문화재의 체계적 보호 및 환수와 환수된 후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환수활동 및 실태조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국외소재문화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견이나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자료제공) 시장은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와 그에 대한 교육·홍보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환수 후 관리) 시장은 환수된 국외소재문화재의 효율적 보호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를 위한 전문 인력 및 예산 확보에 노력해야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

--- 국외소재문화유산 -----

----- 국외소재문화유산 -----

-----.

② -----

----- 국외소재문화유산 -----

-----.

제5조(자료제공) ----- 국외소재문화유산 -----

-----.

제6조(환수 후 관리) -----
- 국외소재문화유산-----
--- 「서울특별시 국가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지정문화유산으로 -----.

제7조(재정지원) ① ----- 국외소재문화유산 -----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 활동 사업
 2.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에 대한 교육·홍보
 3. (생략)
- ③ (생략)

제8조(협조체계 구축) 시장은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와 그에 대한 교육·홍보 활동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문화재청, 국외소재문화재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국제박물관협의회 등 관련기관·단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② -----
----- 국외소재문화유산 -----

-----.

1. 국외소재문화유산 -----

 2. 국외소재문화유산 -----

 3. (현행과 같음)
- ③ (현행과 같음)

제8조(협조체계 구축) ----- 국외소재문화유산-----

---국가유산청,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정비계획의 내용 등) ① (생략)	제8조(정비계획의 내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그 밖에 필요한 정비계획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구역의 특성과 도심부 기능회복을 위하여 복합용도건축계획을 원칙으로 하고 주변의 건축물, <u>문화재</u> 또는 자연 지형물이 있는 경우에는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5. ----- ----- ----- ----- - <u>국가유산</u> ----- ----- ----- -----.
제13조(정비구역 분할·통합 및 결합 시행방법 등) ① (생략)	제13조(정비구역 분할·통합 및 결합 시행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서로 떨어진 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이하 “결합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결합하여 시행하는 정비사업(이하 “결합정비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 ----- ----- ----- ----- ----- ----- -----.
1. 도시경관 또는 <u>문화재</u> 등의 보	1. ----- <u>국가유산</u> -----

호가 필요한 낙후한 지역을 토지의 고도이용이 가능한 역세권 지역과 결합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2. 도시경관 또는 문화재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토지의 이용이 제한된 지역(이하 “저밀관리구역”이라 한다)의 용적률을 토지의 고도이용이 가능한 역세권 지역(이하 “고밀개발구역”이라 한다)에 이전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3. (생략)

③·④ (생략)

제14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정비구역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2. (생략)

3.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문화재 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

2. ----- 국가유산 -----

-----.

3.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2. (현행과 같음)

3. -----
국가유산보호구역,-----

보존지역 등이 포함된 구역으로
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되는 경우

가. ~ 라. (생 략)

4. (생 략)

④ ~ ⑪ (생 략)

제52조(정비기반시설 등의 비용 보
조 등) ① 시장은 법 제92조제2항
및 영 제77조에 따라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비기
반시설의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청장에게 지원할 수 있
다.

1. (생 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로 시행하는 도시정비
형 재개발구역 안에 설치하는
주요 정비기반시설

가. · 나. (생 략)

다. 문화유산 보존을 위하여 문
화재 등의 주변지역에 정비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건축규
모가 제한되는 경우

라. · 마. (생 략)

② ~ ⑨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④ ~ ⑪ (현행과 같음)

제52조(정비기반시설 등의 비용 보
조 등) ① -----

-----.

1. (현행과 같음)

2. -----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국가유산----- 국
가유산 -----

라. · 마. (현행과 같음)

② ~ ⑨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2(특화경관지구의 세분)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도시관리계 획 결정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특화경관지구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제8조의2(특화경관지구의 세분) -- ----- ----- ----- -----.
1.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 <u>문화재</u>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 축물 주변의 역사문화적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1. ----- <u>국가유</u> <u>산</u> ----- ----- ----- -----
2. 3. (생 략)	2. 3. (현행과 같음)
제47조(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47조(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6조제1호에 따라 역사문 화환경보호지구안에서는 「문화 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u>문화재</u> 를 직접 관리·보호하기 위한 건 축물과 시설 이외에는 이를 건축 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시 장 또는 구청장이 그 <u>문화재</u> 의 보 존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u>문</u> <u>화재청장</u> 과의 협의를 거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 ----- 「문화 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 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u>국가유</u> <u>산을</u> ----- ----- <u>국가유산</u> 의 ----- <u>국가</u> <u>유산청장</u> -----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 ⑩ (생략)

⑪ 법 제77조제4항제2호 및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생략)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3. (생략)

⑫ ~ ⑮ (생략)

제5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 ⑩ (현행과 같음)

⑪ -----

-----.

1. (현행과 같음)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지정자연유산

3. (현행과 같음)

⑫ ~ ⑮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에서 전승·유지되고 있는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서울시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형문화재”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여러 세대에 걸쳐서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	<u>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형유산----- ----- ----- ----- ----- -----. 제2조(정의) ----- -----. 1. “무형유산”이란 ----- ----- ----- ----- -----

다.

가. ~ 사. (생략)

2. “전형(典型)”이란 해당 무형문화재의 가치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특징으로서,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유지되고 구현되어야 하는 고유한 기법, 형식 및 지식을 말한다.

3. “보유자”란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문화재의 기능·예능 등을 전형대로 체득·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유단체”란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문화재의 기능·예능 등을 전형대로 체득·실현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한다.

5. ~ 9. (생략)

10. “전승공동체”란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무형문화재를 지역적 또는 역사적으로 공유하며 일정한 유대감 및 정체성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무형문화재를 실현·향유함으로써

--.

가. ~ 사. (현행과 같음)

2. ----- 무형유산-----

-----.

3. -----
----- 무형유산-----
-----.

4. -----
----- 무형유산-----
-----.

5. ~ 9. (현행과 같음)

10. -----

----- 무형유산을 지역적 -----

----- 무형유산을 실현·향유함-----

전승하고 있는 공동체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은 전형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2. (생략)

3. 무형문화재의 가치 구현과 향상

제4조(시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수반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전승자는 전승활동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무형문화재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무형유산-----

-----.

1. 2. (현행과 같음)

3. 무형유산-----

제4조(시장 등의 책무) ① -----

무형유산-----

-----.

② -----

----- 무형유산-----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무형유산-----

-----.

제2장 무형문화재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수립한 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3. (생략)

4. 그 밖에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생략)

④ 시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구청장에게 해당 관할구역의 무형문화재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⑥ (생략)

제7조(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위원회의 설치) ① 무형문화재의 보전

제2장 무형유산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 무형유산-----

③ (현행과 같음)

④ -----

----- 무형유산-----
-----.

⑤·⑥ (현행과 같음)

제7조(서울특별시무형유산위원회의 설치) ① 무형유산의 -----

및 진흥에 관한 다음 사항을 조사
·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이하 “시무형문화재”라 한다)의 지정
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2. (생략)

3. 서울특별시긴급보호무형문화재
(이하 “시긴급보호무형문화재”
라 한다)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
한 사항

4. 그 밖에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 등에 관하여 시장이 심의
에 부치는 사항

② ~ ④ (생략)

⑤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성별
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다
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에서 각각 호선한다.

1. 「고등교육법」 따른 학교에서
무형문화재와 관련된 학과의 조
교수 이상의 지위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서울특별시
무형유산위원회-----
-----.

1. 서울특별시무형유산(이하 “시
무형유산”이라 한다)-----

2. (현행과 같음)

3. 서울특별시긴급보호무형유산
(이하 “시긴급보호무형유산”이
라 한다)-----

4. ----- 무형유산-----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1. 「고등교육법」에 따른 -----
무형유산과 -----

2.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
한 사람

3. 민속학, 인류학, 역사학, 법학,
경영학, 전통공연예술, 전통공예
기술 등 무형문화재 관련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으로서 무형문화재에 관한 지식
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⑥·⑦ (생략)

제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7
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무형문화재 종류별로 업무를 나누
어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③ (생략)

④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으로 본다. 다만, 무형문화재 전반
에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경
우에는 전체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3조(전문위원) ①·② (생략)

③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

2. 무형유산-----

3. -----

--- 무형유산 관련 -----

---- 무형유산에 -----

⑥·⑦ (현행과 같음)

제8조(분과위원회) ① -----

무형유산 -----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 무형유산 -----

-----.

제13조(전문위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무형문화재와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무형문화재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④ (생략)

제3장 시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보유자의 인정 등

제17조(시무형문화재의 지정) ① 시장은 무형문화재로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무형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무형문화재의 지정 대상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시무형문화재의 지정 기준의 세부지표, 배점 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시장은 시무형문화재를 지정하려면 위원회의 해당 분야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또는 해당 무형문화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

-----.

1. 「고등교육법」 제2조-----
---- 무형유산과 -----

2. 무형유산과 -----

④ (현행과 같음)

제3장 시무형유산의 지정 및
보유자의 인정 등

제17조(시무형유산의 지정) ① ----
-- 무형유산으로서 국가무형유산
으----- 무형유산 중
----- 시무형
유산-----.

② ----- 시무형유산의 지정 대상 -----
-- 시무형유산의 지정 기준-----
-----.

③ ---- 시무형유산을 -----
----- 무형유
산에 -----

한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하며,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무형문화재가 시무형문화재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을 시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⑤·⑥ (생략)

제18조(시간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무형문화재를 시간급보호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1. 시무형문화재가 전승여건 및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소멸 위험성이 높아진 경우
2.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할만한 사람이 상당기간 동안 없는 시무형문화재
3. 시무형문화재로서의 전형이 현

-----.

④ ----- 무형유산이 시무형유산-----

-----.

⑤·⑥ (현행과 같음)

제18조(시간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① -----

----- 시무형유산을 시간급보호무형유산-----.

1. 시무형유산이 -----

2. -----

----- 시무형유산
3. 시무형유산으로서의 -----

저히 상실되어 그 전승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워진 시무형문화재

② 제1항에 따른 시간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시무형문화재의 보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지정 절차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무형문화재의 보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시무형문화재의 지정과 제18조에 따른 시간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기간을 단축하거나 지정 절차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간급보호무형문화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 3. (생략)

----- 어려워진 시무형유산

② ----- 시간급보호무형유산-----

-----, ---- 시무형유산-----

③ ----- 무형유산의 보전-----

----- 시무형유산-----

----- 시간급보호무형유산-----

④ ----- 시간급보호무형유산-----

1. ~ 3. (현행과 같음)

4. 무형문화재의 기록

제19조(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 ① 시장은 시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시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시무형문화재의 특성상 그 기능·예능 또는 지식이 보편적으로 공유되거나 관습화된 것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만이 전형대로 체득·보존하여 그대로 실현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 해당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승기량 및 전승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

나. 해당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승실적 및 전승의지가 높을 것

4. 무형유산-----

제19조(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 ① ----- 시무형유산을 -----
----- 시무형유산의 -----
----- 시무형유산-----

-----.

② -----
-----.

1. -----

-----.

가. -- 무형유산-----

나. -- 무형유산-----

다. 해당 무형문화재의 전승에
기여하였을 것

2. 제1호의 보유단체는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
여야 한다.

가. 해당 무형문화재의 기능·
예능 또는 지식의 성질상 개
인이 실현할 수 없고 단체를
이루어서만 실현할 수 있는
경우

나. 해당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로 인정할 만한 사람이 여럿
인 경우

다. 해당 무형문화재가 전승되
는 곳에서 주민 다수가 단체
또는 공동체를 이루어 기능
·예능 또는 지식을 실현하
고 있는 경우

③ (생략)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한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외에 해당
시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
단체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⑤ (생략)

제20조(명예보유자의 인정) ① 시장

다. -- 무형유산-----

2. -----

-----.

가. -- 무형유산-----

--

나. -- 무형유산-----

다. -- 무형유산이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시
무형유산-----
-----.

⑤ (현행과 같음)

제20조(명예보유자의 인정) ① ----

은 보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수교육과 전승활동 업적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유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 그 때부터 보유자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2. (생략)

② (생략)

③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명예보유자를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1.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기간 및 실적

2. 무형문화재 공개 행사 및 전수교육 실적

3. (생략)

④·⑤ (생략)

제21조(전승교육사의 인정) ① 시장은 시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실

-----,

-----.

1. 무형유산-----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무형유산 -----

2. 무형유산 -----

3.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제21조(전승교육사의 인정) ① ---
- 시무형유산-----

시하기 위하여 이수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승교육사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승교육사가 필요한 시무형문화재의 분야별 종목을 미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전승교육사의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종목의 이수자가 된 이후 5년 이상 전승활동을 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승기량 및 전승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
2. 해당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승실적 및 전승의지가 높을 것
3. 해당 무형문화재의 전승에 기여하였을 것

③ ~ ⑤ (생략)

제22조(시무형문화재 등의 지정 고시 및 효력 발생 시기) ① 시장이 시무형문화재 또는 시간급보호무형문화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취지와 내용을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 시무형유산 -----
-----.

② -----

-----.

1. --- 무형유산 -----

--
2. --- 무형유산 -----

3. --- 무형유산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2조(시무형유산 등의 지정 고시 및 효력 발생 시기) ① -----
시무형유산 또는 시간급보호무형유산을 -----

-----.

② 시무형문화재 또는 시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은 제1항에 따라 시보에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5조(시무형문화재 등의 지정 해제) ① 시장은 시무형문화재 또는 시건급보호무형문화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 3. (생략)
- ②·③ (생략)

제26조(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 ① 시장은 보유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제25조에 따라 시무형문화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5.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인하여 해당 시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무형유산 또는 시건급보호무형유산-----

-----.

제25조(시무형유산 등의 지정 해제) ① ----- 시무형유산 또는 시건급보호무형유산이 -----

-----.

1. ~ 3. (현행과 같음)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6조(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 시무형유산-----

5. -----
----- 시무형유산-----

6. 제28조에 따른 정기조사 또는 재조사 결과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승교육사의 기량이 현저하게 떨어져 해당 시무형문화재를 전형대로 실현·강습하지 못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

7. ~ 9. (생략)

10.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로 인정된 경우

②·③ (생략)

제27조(무형문화재 대장) ① 시장은 시무형문화재 대장 및 시간급보호무형문화재 대장(이하 “무형문화재대장”이라 한다)을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무형문화재 및 시간급무형문화재의 특수성에 따라 일부 항목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무형문화재대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시무형문화재의 보전

6. -----

----- 시무형유산을 -----

7. ~ 9. (현행과 같음)

10. -----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 국가무형유산 전승교육사-----

②·③ (현행과 같음)

제27조(무형유산 대장) ① -----
- 시무형유산 ----- 시간급보호무형유산 대장(이하 “무형유산대장”-----
-----,
시무형유산 및 시간급무형유산-----
-----,
-----.

② 무형유산대장-----

-----.

제4장 시무형유산의 보전

제28조(정기조사 등) ① 시장은 시무형문화재의 보존 및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시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및 전승 활동 등 전승의 실태와 그 밖의 사항 등에 관하여 5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시무형문화재에 대하여 재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전승자, 관계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무형문화재의 소재장소 출입 등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전승자, 관계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시무형문

제28조(정기조사 등) ① ----- 시무형유산의 보존 -----
----- 시무형유산의 전수교육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시무형유산 -----

-----.

④ -----

----- 무형유산 -----

-----.

⑤ -----
----- 시무형유산 -----

화재의 전승자, 관계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그 뜻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그 취지를 알릴 수 있다.

⑥·⑦ (생략)

⑧ 시장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정기조사·재조사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시무형문화재 및 시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과 그 해제

2. (생략)

3. 그 밖에 시무형문화재 및 시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29조(조사 및 기록화) ① 시장은 시무형문화재의 분포현황, 전승실태 및 내용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이를 녹음·사진촬영·영상녹화·속기 등의 방법으로 관련 기록을 수집·작성하고 유지·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무형문화재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관련된 연

-----.

-----.

⑥·⑦ (현행과 같음)

⑧ -----

-----.

1. 시무형유산 및 시긴급보호무형유산-----

2. (현행과 같음)

3. ----- 시무형유산 및 시긴급보호무형유산-----

제29조(조사 및 기록화) ① -----

- 시무형유산-----

-----.

② ----- 시무형유산-----

--- 무형유산에 -----

구기관 또는 단체에 제1항에 따른
무형문화재의 조사, 관련 기록의
수집 및 작성을 위탁할 수 있다.

제30조(전문인력의 배치) 시장은 무
형문화재에 관한 전문인력을 배치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2조(행정명령) 시장은 시무형문
화재의 가치 구현과 향상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전승자가 전승활동 과정에서
그 무형문화재의 전형을 훼손하
거나 저해하는 경우 그 활동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
한
2. 전승자 간의 분쟁으로 그 무형
문화재의 보존 및 진흥에 장애
를 초래하는 경우 그 전승자의
전수교육, 공개 등에 대한 일정
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3. 그 밖에 시무형문화재의 원활
한 전승환경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승자에 대
한 무형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긴급한 조치

무형유산의 조사-----
-----.

제30조(전문인력의 배치) ----- 무
형유산-----
-----.

제32조(행정명령) ----- 시무형유산

-----.

1. -----
무형유산-----

2. ----- 무형
유산-----

3. ----- 시무형유산-----

무형유산 보존-----

제33조(청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생략)
2. 제25조에 따른 시무형문화재 등의 지정의 해제
3. (생략)

제34조(시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 ① 시장은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을 위하여 시무형문화재를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 ② 시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전승교육사는 해당 시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 (생략)
- ③ ~ ⑦ (생략)

제35조(전수교육 이수증) ① 시장은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로부터 해당 시무형문화재의 전

제33조(청문) -----

-----.

1. (현행과 같음)
2. ----- 시무형유산 -----

3. (현행과 같음)

제34조(시무형유산의 보호·육성)

- ① -----
----- 시무형유산을 -----
-----.
- ② 시무형유산의 보전 -----

----- 시무형유산의 전수교육-----
-----.

-----.

1. 2. (현행과 같음)
-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35조(전수교육 이수증) ① -----

----- 시무형유산의 전수

수교육을 3년 이상 받았거나 법 제30조에 따른 전수교육학교의 전수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의 기량을 심사하여 해당 시무형문화재의 분야별 종목에 대한 이해가 높고, 그 기능·예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면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량을 심사할 때에는 무형문화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이상이 참여하도록 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 ⑤ (생략)

제36조(전수장학생) ① 시장은 시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서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추천을 받아 전수장학생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수장학생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시무형문화재의 분야별 종목을 미리 선정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교육-----

----- 시무형유산의 분야별 -----

② -----

----- 무형유산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6조(전수장학생) ① ----- 시무형유산 -----

② -----

----- 시무형유산 -----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전수장학생을 추천한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전수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장기간의 심신쇠약이나 그 밖의 사유로 시무형문화재의 전수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2. (생략)

⑥·⑦ (생략)

제37조(시무형문화재의 공개의무 등) ①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회 이상 해당 시무형문화재를 공개하여야 한다.

1.·2. (생략)

②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제1항에 따라 시무형문화재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공개행사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사일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제1항에 따라 시무형문화재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공연장·전시장이나

⑤ -----

-----.

1. -----
----- 시무형유산 -----

2. (현행과 같음)

⑥·⑦ (현행과 같음)

제37조(시무형유산의 공개의무 등)

① -----

----- 시무형유산을 -----
-----.

1.·2. (현행과 같음)

② -----
----- 시무형유산을 -----

-----.

③ -----
----- 시무형유산을 -----

전수교육시설 등의 공개된 장소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공연하거나 실연(實演)하여야 한다.

④·⑤ (생략)

⑥ 시장은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공개에 대한 모니터링 기록을 5년간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시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전승활동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⑦ (생략)

제38조(관람료의 징수)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해당 시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정한다.

제6장 무형문화재의 진흥

제39조(전승지원 등) ① 시장은 무형문화재의 전승, 교육, 공연 등의 활성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전수교육시설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 외에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필요

-----.

④·⑤ (현행과 같음)

⑥ -----

시무형유산 -----

-----.

⑦ (현행과 같음)

제38조(관람료의 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 시무형유산-----
-----.

제6장 무형유산의 진흥

제39조(전승지원 등) ① ----- 무형유산-----

-----.

② (현행과 같음)

③ ----- 무형유산-----

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0조(무형문화재의 교육지원 등)

①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학교문화예술교육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거나 「문화예술진흥법」 제12조에 따라 문화강좌를 설치하는 경우에 무형문화재에 관한 교육이나 강좌가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41조(행사 지원 등) ① (생략)

② 시장은 시무형문화재가 관광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2조(표창) 시장은 보유자와 명예보유자 외의 자로서 시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활용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표창할 수 있다.

-----.

제40조(무형유산의 교육지원 등) ①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5조-----

----- 무형유산-----
-----.

② (현행과 같음)

제41조(행사 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시무형유산이 -----

-----.

제42조(표창) -----

----- 시무형유산-----

-----.

「서울특별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및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를 말한다. 2. 3. (생략)	제2조(정의) ----- -----. 1.----- ----- -----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을 --. 2. 3.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서울특별시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문화재지킴이</u>의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차원의 <u>문화재</u> 홍보 및 보호 활동을 확대하고 <u>문화재지킴이</u> 활동 활성화를 통하여 <u>문화재</u>에 대한 가치 인식 및 향토문화의 계승·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u>문화재지킴이</u>”란 서울의 <u>문화재</u>를 가꾸고 즐기는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여 <u>문화재</u>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장”라 한다)은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의 <u>문화재</u> 홍보	<u>서울특별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 <u>국가유산지킴이</u>----- -----<u>국가유산</u>----- ----- <u>국가유산지킴이</u>----- 국 <u>가유산</u>----- ----- -----. 제2조(정의) “<u>국가유산지킴이</u>”란 서울의 <u>국가유산</u>을 ----- ----- ----- <u>국 가유산</u>을----- -----. 제3조(책무) ----- ----- ----- <u>국가유산</u>-----

보 및 보호와 그 가치를 향유하는
공동체 형성 및 사회적 분위기 조
성을 위하여 문화재지킴이를 포함
한 관련 활동가들과 협력하여 관
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추진계획) 서울시장은 문화재
지킴이 활동의 체계적인 추진과
필요한 협력을 위하여 관련 계획
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① 서울시장
은 문화재지킴이 활성화를 위하여
자치구, 개인, 법인·단체 등과 협
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서울시장은 청소년들에게 문화
재지킴이 관련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기관
및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
할 수 있다.

③ 서울시장은 문화재 홍보 및 보
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
정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서울시장은 문화재지킴
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
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국가유산지킴이-----

-----.

제4조(추진계획) ----- 국가유
산지킴이-----

-----.

제5조(협력체계 구축) ① -----
- 국가유산지킴이-----

-----.

② ----- 국가
유산지킴이-----

-----.

③ ----- 국가유산 -----

-----.

제6조(지원) ----- 국가유산지
킴이-----
-----.

제7조(홍보) 서울시장은 문화재지킴이 활성화를 위한 활동 및 관련 사항을 시보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8조(교육) 서울시장은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문화재지킴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서울시장은 문화재 홍보 및 보호 활동의 장려를 위하여 우수한 문화재지킴이 활동을 한 사람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홍보) ----- 국가유산지킴이-----

-----.

제8조(교육) -----
----- 국가유산지킴이-----

-----.

제9조(포상) ----- 국가유산-----

국가유산지킴이-----

-----.

「서울특별시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 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물류단지 투자의향서 접수 및 <u>문화재</u> 지표조사, 농지·산지현 황조사 등 개괄적인 입지타당성 의 사전검토 및 조회 2. ~ 7. (생략)	제12조(지원센터의 기능) ----- -----. 1. ----- <u>국가유산</u> ----- ----- ----- 2. ~ 7.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소재 근현대 <u>문화유산</u> 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 및 활용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국가유산</u> -----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미래유산”이란 근현대 서울을 배경으로 다수 시민이 체험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사건, 인물 또는 이야기가 담긴 유·무형의 것으로서 서울특별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가 미래세대에 남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것을 말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등록된 <u>문화재</u> 는 제외한다.	1. ----- ----- ----- ----- ----- ----- -----. --- 「 <u>국가유산기본법</u> 」--- ----- <u>국가유산</u> 은 -----.
2. 3. (생략)	2. 3. (현행과 같음)

제16조(서울 미래유산의 취소) 시
장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선정
된 서울 미래유산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서울 미래유산 선정을 취
소할 수 있다.

1. (생략)
2.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
화재로 지정·등록된 경우
3. ~ 5. (생략)

제16조(서울 미래유산의 취소) --

-----.

1. (현행과 같음)
2. 「국가유산기본법」---- 국
가유산으로 -----
3. ~ 5.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자료 구입) ①·② (생략)	제3조(자료 구입)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이 경매자료, 국가 또는 시·도 <u>지정문화재</u> 및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공개구입 또는 현지구입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업무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자료평가위원회의 심의·평가를 받아 구입할 수 있다.	③ ----- -- <u>지정유산</u> ----- ----- ----- ----- -----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3조의2(자료 구입의 제한) 시장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자료를 구입할 수 없다.	제3조의2(자료 구입의 제한)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소유권 확인이 분명하지 않은 <u>문화재</u> 이거나 공동 소유물로 판단될 경우	3. ----- <u>국가유산</u> ----- -----
제4조의2(자료 기증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	제4조의2(자료 기증의 제한) ----- -----

을 때에는 기증 자료를 수증하지
않을 수 있다.

1. (생략)

2. 박물관에 필요치 않은 문화재
또는 문화재적 가치가 없다고 판
단될 경우

제6조(자료수집실무위원회) ①·②
(생략)

③ 위원은 개별 박물관의 경우 관
장과 자료관리관, 건립 중인 박물
관의 경우 부서장과 자료관리관을
당연직으로 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되 문화재분야 전문가 및 서울
특별시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을
포함할 수 있다.

④ ~ ⑥ (생략)

제7조(분야별자료평가위원회) ①·
② (생략)

③ 평가위원은 서울시문화재위원
및 문화재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
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매 회 해당
분야 평가 종료 시까지로 한다.

④·⑤ (생략)

-----.

1. (현행과 같음)

2. ----- 국가유산
또는 국가유산적 -----

제6조(자료수집실무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국가유산분야 -----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7조(분야별자료평가위원회)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서울시국가유산위원
및 국가유산분야 -----

-----.

④·⑤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대상 범위 등) ① 영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중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 3. ~ 6. (생략) ② ~ ⑦ (생략)	제3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대상 범위 등) ① ----- ----- -----. 1. (현행과 같음)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 ----- 3. ~ 6.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49조(건축규제의 완화) ① 법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중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 3. ~ 6. (생략)	제49조(건축규제의 완화) ① ----- ----- ----- -----. 1. (현행과 같음)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 ----- 3.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보호 야생생물에 대한 행위제한 등) ① (생략)	제9조(보호 야생생물에 대한 행위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3.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
4. ~ 10. (생략)	4. ~ 10. (현행과 같음)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야생생물 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누구든지 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제13조(야생생물 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 ----- ----- --. 다만,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

다.

1. ~ 5. (생략)

② · ③ (생략)

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5조(설치장소)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u>문화재보호구역</u> , 하천부지, 산지, 도로부지, 공원구역 등 개별법에 따라 관리 중인 부지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u>국가유산보호구역</u> ----- ----- ----- ----- -----.
4. 5. (생략)	4. 5.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2. (생략) 3. “세계유산지구”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u>문화재청장</u> 이 세계유산 구역과 세계유산 완충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정의) ----- -----. 1. 2. (현행과 같음) 3. ----- ----- ----- ----- <u>국가유산청장</u> ----- ----- ----- -----.
제5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 유산(이하 “세계유산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33조에 따른 세계유산은 제외한다.	제5조(적용 범위) ----- ----- -----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세계유산 등의 멸실·훼손 구간 복원 노력 등) ① (생략) ② 시장은 「문화재보호법」 제62조에 따른 관리청 또는 총괄청이	제10조(세계유산 등의 멸실·훼손 구간 복원 노력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2조-----

국유에 속하는 세계유산 등의 멸
실·훼손 구간 복원과 관련한 협
조를 요청하는 경우에 적극 협력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11조(서울특별시 세계유산보존협
의회의 구성·운영) ① (생 략)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2. (생 략)

3. 건축·도시계획·관광·환경·
문화재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세계유산에 관한 지
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5. (생 략)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서울특별시 세계유산보존협
의회의 구성·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2. (현행과 같음)

3. 건축·도시계획·관광·환경·
국가유산 -----

4. 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 의 행위제한 등) ① 누구든지 생 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 원구역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을 포 함한다)가 포함된 경우에는 「자 연공원법」 또는 「문화재보호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 의 행위제한 등) ① ----- ----- ----- -----. -----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 에 관한 법률」에 ----- 자연유 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 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보호 구역을 포함한다)이 --- 「자연 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 률」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
1. ~ 6. (생략) ② ~ ⑦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생략)	제5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은 <u>역사·전통문화·전통사찰·문화재</u>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관할 전통사찰이나 다른 사찰의 주지, 그 밖에 불교문화 및 <u>불교문화재</u> 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5명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u>역사·전통문화·전통사찰·국가유산</u> ----- ----- ----- ----- ---- <u>불교국가유산</u> ----- ----- -----.
③ ~ ⑦ (생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①·② (생략) ③ 당연직 위원은 시장, 행정(1)부 시장 및 문화본부장, 한양도성 주변 자치구청장, <u>문화재청·서울특별시교육청·수도방위사령부</u> 등 관계기관의 대표와 시장이 지명하는 서울특별시 관계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1. ~ 3. (생략) 4. 세계유산 및 <u>문화재</u> 분야 전문가, 한양도성 주변 마을 대표, 시민단체 대표, 종교계, 경제계, 언론 등 각계 대표 ④ ~ ⑥ (생략)	제4조(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u>국가유산청·서울특별시교육청·수도방위사령부</u>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u>국가유산</u> ----- ----- -----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7조(유산구역 및 완충구역) ① (생략) ② 유산구역은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른 문화재구역과 제27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으로 한다.	제7조(유산구역 및 완충구역) ① (현행과 같음) ② 유산구역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같은 법 제2

③ 완충구역은 「문화재보호법」 제 13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한다.

7조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으로 한다.

③ 완충구역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자문단 구성) ① (생략)	제5조의2(자문단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15명 이내의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자치구(이하 “자치구”라 한다) 향토 사학자, <u>문화재위원회</u>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 ----- ----- ----- <u>국가유산위원</u> -----.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u>문화재</u> 의 보호·보존·보급 또는 활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 ----- ----- - <u>국가유산</u>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조례 문화재 등의 용어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조례 문화재 등의 용어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은 국가유산체제 전환으로 문화재 등의 용어가 국가유산 등의 용어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 용어를 법률 용어와 일치하게 변경·신설하는 개정으로 서울시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이정수

추 계 분 석 관 이홍래

☎ 02-2180-7952

e-mail : hong1004@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